단국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운영내규

1984. 3
1988. 11
1993. 9
1999. 3
2005. 3
2005. 9
2011. 5
2018. 1

기 계 공 학 과

제 1 조 목적

학과의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학과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학점이수

1. 석·박사과정은 공히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전 취득학점의 1/2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하위 학위를 기계공학과와 상이한 학과에서 취득한 자나 특수 대학원 졸업자는 추가로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 보충과목을 포함하여 한 학기당 시간제 학생인 경우 9학점, 전일제 학생인 경우 12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제 4 조 외국어시험

1. 외국어시험의 면제조건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2. 내국인의 외국어시험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영어만 시행한다.

3. 외국인의 외국어시험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해야하며 영어선택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선택 가능하다.

제 5 조 종합학력시험

1.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은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연구지도 학점 제외)한 자, 박사학위 과정은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이상을 취득(연구지도 학점 제외)한 자, 석·박 통합과정은 전공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연구지도 학점 제외)한 자로 한다.

2.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시행된다.

3. 필기시험의 응시과목은 석사과정일 경우 전임교원의 과목중 2개 과목으로 한다. 박사과정인 경우 전공 4과목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4.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당 1명의 교수가 출제 및 채점을 주관한다.

5.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2명의 교수가 공동 출제 및 채점을 진행한다.

6.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7. 석·박사 과정 모두 국제학술대회 논문상을 수상한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8. 위 내용은 2018년 3월부터 적용된다.

제 6 조 논문 계획서 발표

1. 석사과정은 재학 3학기 초에 박사과정은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이후 적어도 최종학위논문 발표 학기 한 학기 이전에 논문 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2. 논문계획서 발표는 학과의 전교수와 대학원생 참여하에 공개로 시행한다.

제 7 조 박사학위 연구실적 심사

1.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연구 실적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구 실적에 포함되는 논문은 박사학위 과정 중에 발표된 것에 한하며 박사학위 청구 논문과 동일한 분야라야 한다.

3. 연구 실적은 주저자로 SCI(SCIE 포함) 논문 1편 이상으로 한다.

4. 실적심사에 제출된 모든 논문은 지도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동일 논문으로 1회에 한하여 연구 실적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적심사로 제출하는 논문에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다른 주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 포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한다.

6. 실적심사 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증명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은 학위 논문심사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심사일 7일 전까지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석사학위 논문 심사

1.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실제 발표자로 연구결과를 1회 이상 발표하여야만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2. 발표한 연구결과는 석사학위 과정 중에 수행된 것에 한하며 석사학위 청구 논문과 동일한 분야이어야 한다.

3. 발표한 학술대회논문에는 지도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지도교수 위촉

1. 지도교수 위촉 희망자는 지도 받기를 원하는 교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마감일 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 교수를 지도교수로 희망할 경우는 학과 교수 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제 10 조 논문작성

1. 논문 작성은 대학원 논문서식 및 별첨의 기계공학과 학위 논문 작성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계과정

1. 연계과정 신청은 3개 학기 이내 졸업예정자로 한다.

2. 석·박사 통합과정 수업연한 학기는 6학기(전공 60학점, 연구지도 15학점)으로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수료전공 학점인 60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 한다.

3. 연계과정 수료자의 연구등록은 수료 이후의 학기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최장 10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연계과정으로 수료한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하여 원하는 정규 4학기에서 단축된 1개 학기만 연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 조 학과 운영위원회

1.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1988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각 조항은 학과 교수 회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 단 개정된 규정은 개정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적용된다.
3. 본 내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4. 변경된 내규는 1994년 3월부터 시행한다.
5. 변경된 내규는 1999년 3월부터 시행한다.
6. 제 3조의 내용은 200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변경된 내규는 2005년 3월부터 시행한다.
7. 제 3조의 내용은 2005학년도 9월에 시행되는 종합학력시험부터 적용하며 4항의 합격점수를 80점에서 70점으로 조정하는 것은 대학원의 시행계획서와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8. 제 4조의 내용은 2011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변경된 내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변경된 내규는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

김영은	김대근	김태정	박선호	배성재	백광현	윤경환	임성한	정성환	지성철	최덕기